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15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 .....                | 3  |
| 2. 침해사고 조사 진행상황 및 원인분석 결과 국회 보고 ..... | 15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6. 3. 27.

다. 회 부 일 : 2026. 3.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

### Ⅲ. 검토의견

#### 1.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 가. 개정안의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의 탐지·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의  
로그기록 보관의무를 부여함(안 제45조의4 신설).
-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5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기록을 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  
48조의4제5항).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u>제45조의4(로그기록 보관 의무)</u><br><u>①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자</u><br><u>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u><br><u>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u><br><u>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br><u>침해사고의 탐지·대응 및 피</u><br><u>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신이</u><br><u>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u> |

| 현행                                                                                                                                                                                                                                                                                                          | 개정안                                                                                                                                                                                                                                                                                                                                                                                                                                                   |
|-------------------------------------------------------------------------------------------------------------------------------------------------------------------------------------------------------------------------------------------------------------------------------------------------------------|-------------------------------------------------------------------------------------------------------------------------------------------------------------------------------------------------------------------------------------------------------------------------------------------------------------------------------------------------------------------------------------------------------------------------------------------------------|
| <p>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생략)</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p> <p>⑥ · ⑦ (생략)</p>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p><u>접속기록, 인증기록, 권한 변경 기록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관련 자료(이하 “로그기록”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 대상, 절차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u><br/> <u>-----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u></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7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 -----<br/> -----.</p> |

| 현행                                                                                         | 개정안                                                                                                                                  |
|--------------------------------------------------------------------------------------------|--------------------------------------------------------------------------------------------------------------------------------------|
| 1. ~ 4의4. (생략)<br><u>&lt;신설&gt;</u><br><br>4의5. · 4의6. (생략)<br><br>5. ~ 24. (생략)<br>④ (생략) | 1. ~ 4의4. (현행과 같음)<br>4의5.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br>4의6. · 4의7. (현행 제4호의5 및 제4호의6과 같음)<br>5. ~ 24.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 |
| ※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기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sup>1)</sup>,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이처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로그기록과 같은 접속기록의 보관 의무는 없으며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한 로그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로그(log)는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내용이나 접속현황 등 다양한 운용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의미하며, 로그 분석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점, 침입경로, 공격자 추적 등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음<sup>3)</sup>.
  - 즉, 침해사고 발생 시에 침해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킹 공격 경로 및 피해 범위를 확보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그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평상시에도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KISA보호나라&KrCERT/CC, 정보보호 용어, ‘로그분석’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5조의4제1항의 로그기록 보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 보관 의무와 중복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sup>4)</sup>, 개정안의 로그기록 보관 의무대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양자는 의무의 실질이 상당 부분 유사함.
- 다만, 개정안의 로그기록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접속기록 외에 인증기록,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보관 대상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특히, 두 법령이 보관 기간·대상·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을 각각 달리 정할 경우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감독기관이 이원화 되어 정책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9조에 따른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서는 접속기록을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중요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sup>5)</sup>.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방법·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반면, 개정안은 안 제76조제3항제4의5호에 따라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관 기간·대상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둘째, 안 제45조의4제1항은 로그기록 보관 의무대상자를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기록보관을 위한 저장설비 구축과 관리비용을 부담시키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대상의 기본 범위 또는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준에 대하여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법률에 직접 기본적인 이용자 수, 매출액 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6)</sup>.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셋째, 안 제45조의4 및 제48조의4제5항의 로그기록 보관 및 보존 의무 신설은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법<sup>7)</sup>에 따라 강화되는 자료 보존명령 제도의 시행 효과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러한 자료보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음.

#### <자료보존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개정사항 비교>

| 범률       | 현행법                                                                                                           | 개정법(2026.10.01.시행)                                                                                                 |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u><br><u>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 관련<br>조문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그런데 동 개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벌칙 강화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보존 의무와 형사처벌 체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우선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른 벌칙 강화가 자료보전 명령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지를 살펴본 후, 현행 명령 방식 만으로는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로그기록 보전의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은 위임 근거의 흠결 및 위임 범위의 불명확성, 관련 벌칙 규정의 정비 등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5조의4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사항으로 로그기록 보관 기간, 대상, 절차와 함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는 로그기록의 단순 보관과는 별개로 성격이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임의 실질이 되는 제45조의4제1항에 보호조치 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안 제48조의4제5항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을 명하는 대신 당사자 스스로 로그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명령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던 의무가 상시적 의무로 바뀐다는 점에서 로그기록 보존의 기간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제45조의4에 따른 로그기록 보관과는 달리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로그기록 보존 의무 부과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존 요건이 되는 침해사고를 사고의 중대성, 영향을 받는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73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 10. 1.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법 제71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8)</sup> 개정안에 따라 ‘명령’ 절차가 없어지고 보존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벌칙 규정도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함.

- 다섯째, 시행 예정인 개정법과의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발의 이후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sup>9)</sup>은 정보보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5조의4로 신설하고 있으므로,

8) 10p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개정사항 비교”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개정안에 따라 로그기록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과 벌칙·과태료 규정도 함께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로그기록 보관은 기업별 시스템 환경에 따른 자율적 영역으로 법적 의무에 따른 일률적 보관은 상당한 인프라 구축·유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를 목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를 기업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보안관제 등 실질적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침해사고 방지 측면에서 실효적일 것임.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접근권한 부여·변경 및 말소에 대한 기록 의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첩 적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

###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접속기록 보관 의무 관련 규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로그기록의 일률적 보관의무 부과는 기업별 기록보관을 위한 기술적 한계와 함께, 과도한 로그 축적으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침해사고 조사 진행상황 및 원인분석 결과 국회 보고

### 가. 개정안의 내용

-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고,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48조의4제8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생략)<br>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u><br>⑥ · ⑦ (생략)<br><u>&lt;신설&gt;</u>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u><br>-----<br>----- <u>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u><br>⑥ · ⑦ (현행과 같음)<br>⑧ <u>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중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고,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u> |

| 현행     | 개정안                                                    |
|--------|--------------------------------------------------------|
| ⑧ (생략) | <u>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br>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과기부장관은 현행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를 과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뿐<sup>10)</sup> 별도의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 및 원인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의 국회 보고규정과 관련하여 보고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민·관합동조사단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장관이 구성하는 임시 조사조직으로, 법률상 침해사고의 분석·대책 마련과 조사단 구성 권한은 과기부장관에게 있음<sup>11)</sup>. 따라서 개정안 제48조의4 제8항의 국회 보고의무 주체도 민·관합동조사단 자체보다는 행정 책임을 지는 과기부장관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침해사고 원인분석 진행상황을 국회에 중간·최종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8조의4제7항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 결과 알게 된 정보를 원인 분석이 끝난 이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sup>12)</sup>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국회보고 의무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분석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의무와의 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해당 정보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회 보고는 원자료 제출 방식이 아니라 분석결과·조치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의무화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⑥ (생략)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내용의 국회보고 의무화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조사의 일관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위해서도 중간·결과보고 의무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국회 중간보고 의무 부과 시 해당 정보의 외부 유출로 인한 조사에의 영향으로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
| 문 의 처        |
| 02)6788-5235 |